

- '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5. 10. 4 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5. 10. 10

다. 상 정 일 자 : 제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'95. 10. 11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(지출결정총액 - 지출액)

- 일선 기관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----- 17,840천원 - 17,840천원
- 하단오일장 정비 관련 경비 ----- 7,500천원 - 6,853천원
- '부산광역시'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개각 ----- 9,503천원 - 6,47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'9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4,843천원으로,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

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서,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,

○ '94년도에 지출된 내용은 일선기관 민원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및 '부산직할시'가 '부산광역시'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개각 등은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부득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,

우리구의 현안사항이던 하단 5일장 정비 관련 경비의 경우에는 그 효과는 지대하였으나, 사전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으로서 금후에는 소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등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아울러 '부산광역시'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개각 등을 위해 예비비 9,503천원을 지출 결정 한 후 이의 2/3에 해당하는 6,470천원만 실제 소요되고 3,033천원은 불용처리되므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후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(임석진 예산계장)

○ 질 의 : 공무원 해외연수 규모(인원 및 대상국)는?

⇒ 답 변 : 내무부 지침에 의거 부산시에서 주관하였으며 일본을 비롯해서 선진국이 대부분 이며 13명(구 2, 동 11명)을 예비비 재원으로 실시 하였음

○ 질 의 : 국외여행 예비비 집행사유가 되는 것인지? 또한 하단 5일장 정비 문제는 전부터 예상되었다고 보는데 급식비 지급비용에 문제가 없는지?

⇒ 답 변 : 구에서 주관하였으면 예산편성이 가능하였음.

당초 본예산에 1,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, 3월이전 1,100만원이 집행되어 부득이

예비비 재원으로 각구 균형을 위해 집행하였으며,

직원 급식비 문제는 근무인원의 불확정으로 최소비용만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
전 공무원이 동원되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재원확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
예비비 재원으로 최소경비 지급분에 대하여 집행한 것임.

○ 질 의 : 해외연수 실시결과 평가분석 및 내년도 연수계획과 의원해외 연수예산편성에
따른 향후 추진 사항은?

⇒ 답 변 : 직원의 사기양양대책으로 좋은 반응을 가져오고 있으며, 내년도 연수계획은
'95 예산심의시 보고하겠음.

의원 국외여행경비 기준은 임기중 1회 실시와 연간 의원정수에 1/3수준으로
하고 기간은 8 - 10일간으로 하고 자매결연 도시방문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
한다는 내무부 편성지침이 하달되어 있음.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참고 사항

국외연수 실시내역(91년 - 95년) 및 하단 5일장 정비에 따른 급양비 등 예비비집행 내역

▷ 서면제출키로 의결

7. 심사 결과 : 원안 의결